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94호
2018. 12. 21.(금)

차 례

조 례(1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04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05호)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조례 제1306호)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례 제1307호)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308호)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09호)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310호)24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11호)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12호)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13호)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14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15호) ..7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16호)7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17호)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18호)9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19호)9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320호)9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21호)99

차 례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65호)102

고 시(5)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8-174호)109
-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고시 제2018-175호)110
- 2019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고시 제2018-176호)113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고시 제2018-177호)12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78호)124

공 고(2)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8-975호)125
-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 제2018-982호)126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월	2,080,600 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3%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소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및 소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 가. 불변기일도과
 - 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를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과 본 조례가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정원,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고문료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0조에 따른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대해 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주택·일자리·보육·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홍보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교육공동체과장, 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추천대상 및 추천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서면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4명 이내의 직
원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
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력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장의 직위 변경 및 인력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 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

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

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천방법에 따른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에 대해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해 정함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 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대

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재산”을 “동행정복지센터재산”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합민원실 공무원 복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계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의”를 “동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별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 92 (오정동)
3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10 (대화동)
4	회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읍내동)
5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10 (비래동)
6	송촌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
7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47 (중리동)
8	법1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법동)
9	법2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 (신탄진동)
11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7번길 15 (석봉동)
12	덕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60 (덕암동)
13	목상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7 (목상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8개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 로 정비함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함(안 별표).
- 부칙에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사용한 조례를 “동행정복지센터” 로 일괄 정비함(안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때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모집공고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며, 징수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매각기 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 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

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

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
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
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
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2018.3.27.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결과 공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예술품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푸른대덕21”을 “대
덕의제2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명이내”를 “20명 이내”로 한다.

제17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협의회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정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지원목적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 훼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등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경작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 등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동일 농업인 등에게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

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1조 및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기동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포획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포획단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한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동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포획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30,000원

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동포획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위치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피해지원금의 지급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연락처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변경사유						
<p>「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년 월 일</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iv>						
<p>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p>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 훼손 신고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설치면적		설치일자	. . .
시설물의 종류			
설치금액 (100%)	- 총 금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 유			
<p>「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멸실 또는 일부 훼손되었기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사유서, 관련사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 농업· 임업인	주소	시 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피해 현황	피해지역	시 구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일간)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인 피해지역 통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해 경작자	주 소	시 구		
	성 명		농업·임업인 여부	여 부
	생년월일			
피해 조사 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시 구 (지목 : , 지적 : m ²)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및 피해율	m ²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부	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지역 여부		해당()	해당없음()
<p>「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40px;">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40px;">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40px;">관할 동장 (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p>붙임</p> <p>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p> <p>2. 피해작물 전경 사진</p>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해 농(임)업인	주소	시 구		
	성명			
	생년월일			
피해 현황	피해지역	시 구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지원금액		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시 구		
청구금액	원(₩)			
<p>「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청구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p>				

[별지 제8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 구		
포획기간	20 ~ 20			
포획활동 장 소	시 구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	멧돼지	- 포획량 : 마리 - 사체 처리 : 자가소비(), 소각처리(), 매립처리 ()		
	고라니	- 포획량 : 마리 - 사체 처리 : 자가소비(), 소각처리(), 매립처리 ()		
<p>「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처리하였음을 신고하며, 포획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현장사진, 위치도</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 보상금 한도,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포획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 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

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

고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

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이 오지마을 등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의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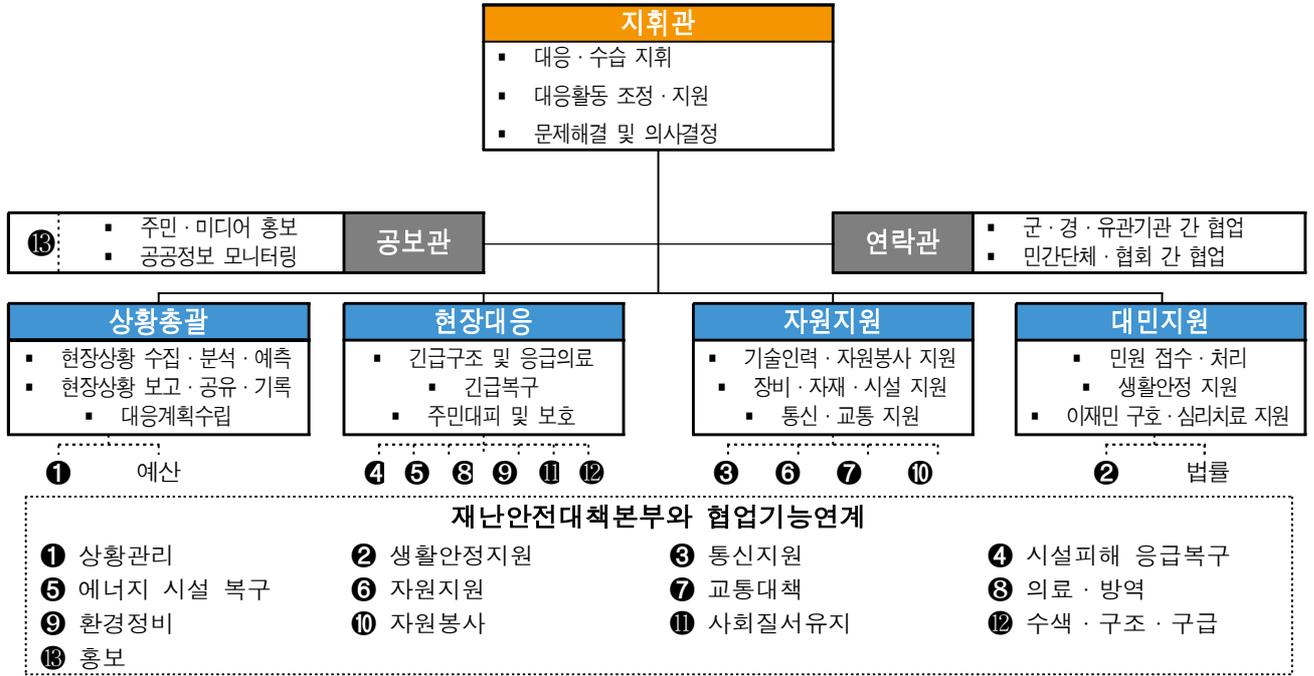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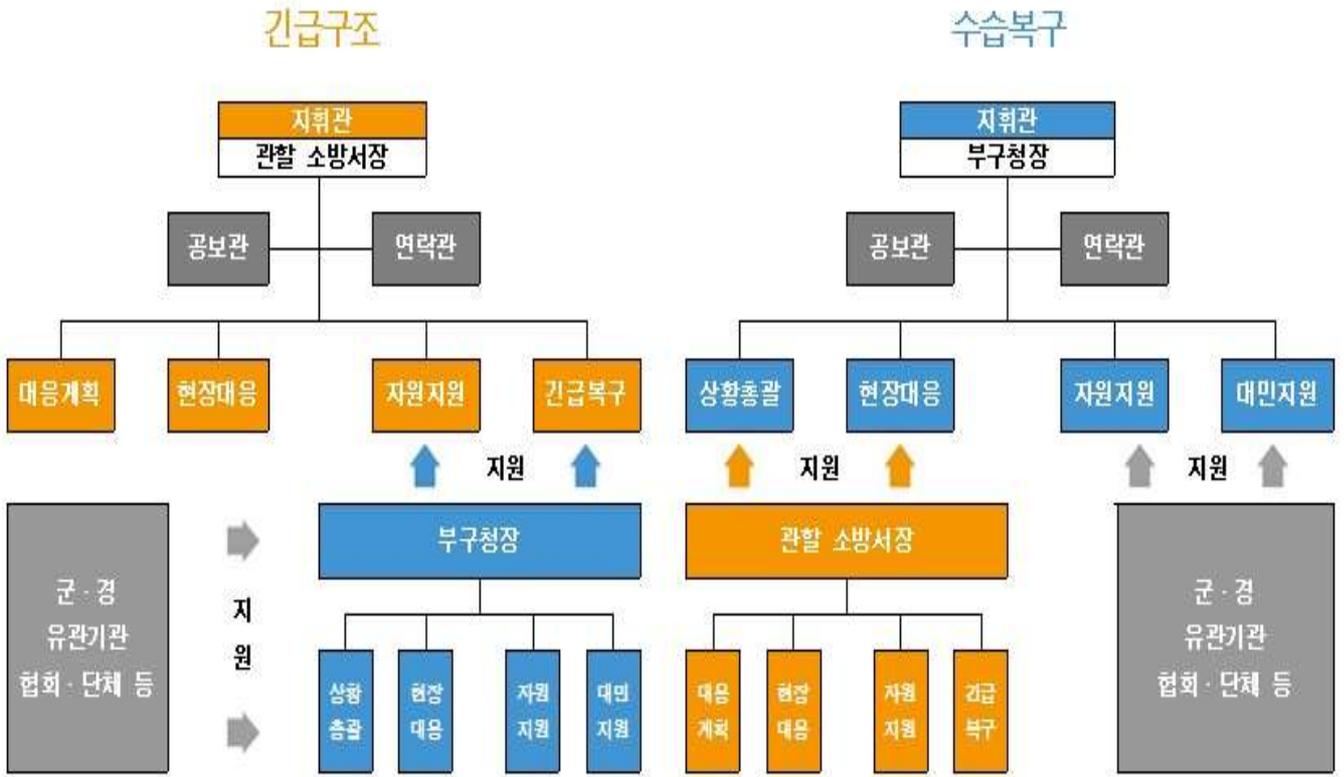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비함(안 제3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을 정비함(안 제7조).
-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함(안 제9조).
- 긴급구조통제단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을 지원함(안 제15조).
- 통신망 두절 시 현장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속기한)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준속기한)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1조).
-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등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
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
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 중 “구축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용어 정비 등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 법률로 수정함(안 제5조).
-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
라 한다)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매각
기관 선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

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 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 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4) 대금 납부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2018.3.27.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입징수 결과 제출기한 연장의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및 선정 신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매각재산의 인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별지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지 적 기 준 점 성 과 고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기준점 종 류	기준점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559	317408.68	240557.32	317408.98	240557.55	재설치
도근점	569	317270.21	240673.83	317270.26	240673.96	"
도근점	570	317341.13	240705.50	317341.01	240705.63	"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18년 12월 12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건 명 :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의 적용)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⑧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II. 건 명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66,373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시가표준액 산출예시 ⑤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12,730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적용요령 ⑤산출예시
 ⑥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39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
 ⑥잔가율표

라. 향 공 기 : 241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 설 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산출방법

사. 입 목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아. 어 업 권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⑤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⑥어업권 내역

자. 광업권

- ①용어정의 ②광업권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차. 회원권

-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카. 지하자원

- ①용어정의 ②지하자원(광물)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⑤지하자원 적용가액

2. 세부결정사항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2018. 12.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결과

○ 회계별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	
계	380,390,000	356,871,000	23,519,000	6.59%	
일 반 회 계	374,800,000	347,500,000	27,300,000	7.86%	
기 타 특 별 회 계	5,590,000	9,371,000	△3,781,000	△40.35%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4,000	0	14,000	순증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581,000	539,000	42,000	7.79%	
수 질 개 선	1,347,000	916,000	431,000	47.05%	
지 하 수 관 리	1,040,000	1,033,000	7,000	0.68%	
주 차 장	2,608,000	6,883,000	△4,275,000	△62.11%	

일 반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74,800,000	100.00 %	347,500,000	100.00 %	27,300,000	7.86%
100 지방세수입	42,900,000	11.45 %	40,800,000	11.74 %	2,100,000	5.15%
110 지방세	42,900,000	11.45 %	40,800,000	11.74 %	2,100,000	5.15%
111 보통세	42,630,000	11.37 %	40,530,000	11.66 %	2,100,000	5.18%
113 지난년도수입	270,000	0.07 %	270,000	0.08 %	0	0.00%
200 세외수입	13,225,444	3.53 %	15,007,160	4.32 %	△1,781,716	△11.87%
210 경상적세외수입	10,688,099	2.85 %	11,048,559	3.18 %	△360,460	△3.26%
211 재산임대수입	98,701	0.03 %	100,270	0.03 %	△1,569	△1.56%
212 사용료수입	1,069,832	0.29 %	1,117,664	0.32 %	△47,832	△4.28%
213 수수료수입	4,505,422	1.20 %	4,524,488	1.30 %	△19,066	△0.42%
214 사업수입	175,846	0.05 %	175,628	0.05 %	218	0.12%
215 징수교부금수입	3,877,823	1.03 %	4,056,579	1.17 %	△178,756	△4.41%
216 이자수입	960,475	0.26 %	1,073,930	0.31 %	△113,455	△10.56%
220 임시적세외수입	2,537,345	0.68 %	3,958,601	1.14 %	△1,421,256	△35.90%
221 재산매각수입	70,000	0.02 %	70,000	0.02 %	0	0.00%
222 부담금	295,584	0.08 %	285,474	0.08 %	10,110	3.5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523,879	0.14 %	506,089	0.15 %	17,790	3.52%
224 기타수입	1,147,882	0.31 %	2,597,038	0.75 %	△1,449,156	△55.80%
225 지난연도수입	500,000	0.13 %	500,000	0.14 %	0	0.00%
300 지방교부세	7,800,000	2.08 %	6,000,000	1.73 %	1,800,000	30.00%
310 지방교부세	7,800,000	2.08 %	6,000,000	1.73 %	1,800,000	30.00%
311 지방교부세	7,800,000	2.08 %	6,000,000	1.73 %	1,800,000	30.00%
400 조정교부금등	51,083,322	13.63 %	49,828,725	14.34 %	1,254,597	2.52%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1,083,322	13.63 %	49,828,725	14.34 %	1,254,597	2.52%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1,083,322	13.63 %	49,828,725	14.34 %	1,254,597	2.52%
500 보조금	239,385,234	63.87 %	216,164,115	62.21 %	23,221,119	10.74%
510 국고보조금등	140,487,286	37.48 %	129,500,657	37.27 %	10,986,629	8.48%
511 국고보조금등	140,487,286	37.48 %	129,500,657	37.27 %	10,986,629	8.48%
520 시·도비보조금등	98,897,948	26.39 %	86,663,458	24.94 %	12,234,490	14.12%
521 시·도비보조금등	98,897,948	26.39 %	86,663,458	24.94 %	12,234,490	14.1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06,000	5.44 %	19,700,000	5.67 %	706,000	3.58%
710 보전수입등	19,806,000	5.28 %	19,700,000	5.67 %	106,000	0.54%
711 잉여금	19,806,000	5.28 %	19,700,000	5.67 %	106,000	0.54%
720 내부거래	600,000	0.16 %	0	0.00 %	600,000	순증
721 전입금	600,000	0.16 %	0	0.00 %	600,000	순증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74,800,000	100.00 %	347,500,000	100.00 %	27,300,000	7.86 %
010 일반공공행정	13,454,151	3.59 %	13,425,110	3.86 %	29,041	0.22 %
011 입법및선거관리	708,367	0.19 %	2,146,117	0.62 %	△1,437,750	△66.99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880,488	0.23 %	851,312	0.24 %	29,176	3.43 %
016 일반행정	11,865,296	3.17 %	10,427,681	3.00 %	1,437,615	13.79 %
020 공공질서및안전	1,061,775	0.28 %	969,114	0.28 %	92,661	9.56 %
025 재난방재·민방위	1,061,775	0.28 %	969,114	0.28 %	92,661	9.56 %
050 교육	2,824,371	0.75 %	5,568,375	1.60 %	△2,744,004	△49.28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2,301,944	0.61 %	4,956,664	1.43 %	△2,654,720	△53.56 %
053 평생·직업교육	522,427	0.14 %	611,711	0.18 %	△89,284	△14.60 %
060 문화및관광	7,082,486	1.89 %	5,248,953	1.51 %	1,833,533	34.93 %
061 문화예술	4,043,704	1.08 %	2,814,151	0.81 %	1,229,553	43.69 %
062 관광	219,117	0.06 %	23,117	0.01 %	196,000	847.86 %
063 체육	2,279,367	0.61 %	2,045,806	0.59 %	233,561	11.42 %
064 문화재	540,298	0.14 %	365,879	0.11 %	174,419	47.67 %
070 환경보호	11,326,135	3.02 %	11,409,014	3.28 %	△82,879	△0.73 %
071 상하수도·수질	300,314	0.08 %	341,350	0.10 %	△41,036	△12.02 %
072 폐기물	10,629,344	2.84 %	10,713,220	3.08 %	△83,876	△0.78 %
073 대기	143,385	0.04 %	112,256	0.03 %	31,129	27.73 %
076 환경보호일반	253,092	0.07 %	242,188	0.07 %	10,904	4.50 %
080 사회복지	210,687,625	56.21 %	187,810,652	54.05 %	22,876,973	12.18 %
081 기초생활보장	37,671,664	10.05 %	34,049,542	9.80 %	3,622,122	10.64 %
082 취약계층지원	49,597,164	13.23 %	42,365,979	12.19 %	7,231,185	17.07 %
084 보육·가족및여성	47,148,299	12.58 %	45,242,800	13.02 %	1,905,499	4.21 %
085 노인·청소년	67,200,011	17.93 %	57,133,490	16.44 %	10,066,521	17.62 %
086 노동	1,456,233	0.39 %	1,194,373	0.34 %	261,860	21.92 %
087 보훈	964,702	0.26 %	834,732	0.24 %	129,970	15.57 %
089 사회복지일반	6,649,552	1.77 %	6,989,736	2.01 %	△340,184	△4.87 %
090 보건	7,257,734	1.94 %	7,302,532	2.10 %	△44,798	△0.61 %
091 보건의료	6,744,702	1.80 %	6,798,543	1.96 %	△53,841	△0.79 %
093 식품의약안전	513,032	0.14 %	503,989	0.15 %	9,043	1.79 %
100 농림해양수산	8,907,202	2.38 %	6,138,511	1.77 %	2,768,691	45.10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101 농업·농촌	1,340,979	0.36 %	1,175,319	0.34 %	165,660	14.09 %
102 임업·산촌	7,566,223	2.02 %	4,963,192	1.43 %	2,603,031	52.45 %
110 산업·중소기업	661,833	0.18 %	518,401	0.15 %	143,432	27.67 %
114 산업진흥·고도화	257,742	0.07 %	192,958	0.06 %	64,784	33.57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404,091	0.11 %	319,705	0.09 %	84,386	26.39 %
120 수송및교통	26,112,895	6.97 %	25,686,512	7.39 %	426,383	1.66 %
121 도로	5,838,219	1.56 %	6,059,644	1.74 %	△221,425	△3.65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0,274,676	5.41 %	19,626,868	5.65 %	647,808	3.30 %
140 국토및지역개발	16,873,630	4.50 %	18,383,714	5.29 %	△1,510,084	△8.21 %
141 수자원	2,346,096	0.63 %	4,320,347	1.24 %	△1,974,251	△45.70 %
142 지역및도시	14,527,534	3.88 %	14,063,367	4.05 %	464,167	3.30 %
160 예비비	3,788,201	1.01 %	4,114,234	1.18 %	△326,033	△7.92 %
161 예비비	3,788,201	1.01 %	4,114,234	1.18 %	△326,033	△7.92 %
900 기타	64,761,962	17.28 %	60,924,878	17.53 %	3,837,084	6.30 %
901 기타	64,761,962	17.28 %	60,924,878	17.53 %	3,837,084	6.3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500 보조금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510 국고보조금등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511 국고보조금등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110 산업·중소기업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4,000	100.00 %	0	0.00 %	14,000	순증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1,000	100.00 %	539,000	100.00 %	42,000	7.79%
200 세외수입	27,094	4.66 %	2,117	0.39 %	24,977	1179.83%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6	0.30 %	2,117	0.39 %	△361	△17.05%
216 이자수입	1,756	0.30 %	2,117	0.39 %	△361	△17.05%
220 임시적세외수입	25,338	4.36 %	0	0.00 %	25,338	순증
224 기타수입	25,338	4.36 %	0	0.00 %	25,338	순증
500 보조금	552,026	95.01 %	536,883	99.61 %	15,143	2.82%
510 국고보조금등	441,621	76.01 %	429,507	79.69 %	12,114	2.82%
511 국고보조금등	441,621	76.01 %	429,507	79.69 %	12,114	2.82%
520 시·도비보조금등	110,405	19.00 %	107,376	19.92 %	3,029	2.82%
521 시·도비보조금등	110,405	19.00 %	107,376	19.92 %	3,029	2.8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80	0.32 %	0	0.00 %	1,880	순증
710 보전수입등	1,880	0.32 %	0	0.00 %	1,880	순증
711 잉여금	1,880	0.32 %	0	0.00 %	1,880	순증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81,000	100.00 %	539,000	100.00 %	42,000	7.79 %
080 사회복지	581,000	100.00 %	539,000	100.00 %	42,000	7.79 %
081 기초생활보장	581,000	100.00 %	536,883	99.61 %	44,117	8.22 %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47,000	100.00 %	916,000	100.00 %	431,000	47.05%
200 세외수입	9,818	0.73 %	11,297	1.23 %	△1,479	△13.09%
210 경상적세외수입	9,818	0.73 %	11,297	1.23 %	△1,479	△13.09%
216 이자수입	9,818	0.73 %	11,297	1.23 %	△1,479	△13.09%
500 보조금	1,337,182	99.27 %	904,703	98.77 %	432,479	47.80%
510 국고보조금등	1,337,182	99.27 %	904,703	98.77 %	432,479	47.80%
511 국고보조금등	1,337,182	99.27 %	904,703	98.77 %	432,479	47.8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47,000	100.00 %	916,000	100.00 %	431,000	47.05 %
140 국토및지역개발	1,216,695	90.33 %	800,896	87.43 %	415,799	51.92 %
141 수자원	1,216,695	90.33 %	800,896	87.43 %	415,799	51.92 %
900 기타	130,305	9.67 %	115,104	12.57 %	15,201	13.21 %
901 기타	130,305	9.67 %	115,104	12.57 %	15,201	13.21 %

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40,000	100.00 %	1,033,000	100.00 %	7,000	0.68%
200 세외수입	129,300	12.43 %	118,000	11.42 %	11,300	9.58%
210 경상적세외수입	27,200	2.62 %	16,000	1.55 %	11,200	70.00%
216 이자수입	27,200	2.62 %	16,000	1.55 %	11,200	7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2,100	9.82 %	102,000	9.87 %	100	0.10%
222 부담금	100,000	9.62 %	100,000	9.68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2,100	0.20 %	2,000	0.19 %	100	5.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0,700	87.57 %	915,000	88.58 %	△4,300	△0.47%
710 보전수입등	910,700	87.57 %	915,000	88.58 %	△4,300	△0.47%
711 잉여금	910,700	87.57 %	915,000	88.58 %	△4,300	△0.47%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40,000	100.00 %	1,033,000	100.00 %	7,000	0.68 %
070 환경보호	1,003,804	96.52 %	1,001,384	96.94 %	2,420	0.24 %
071 상하수도·수질	1,003,804	96.52 %	1,001,384	96.94 %	2,420	0.24 %
900 기타	36,196	3.48 %	31,616	3.06 %	4,580	14.49 %
901 기타	36,196	3.48 %	31,616	3.06 %	4,580	14.49 %

주 차 장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608,000	100.00 %	6,883,000	100.00 %	△4,275,000	△62.11%
200 세외수입	1,133,223	43.45 %	1,443,280	20.97 %	△310,057	△21.48%
210 경상적세외수입	87,015	3.34 %	130,500	1.90 %	△43,485	△33.32%
215 징수교부금수입	81,015	3.11 %	124,500	1.81 %	△43,485	△34.93%
216 이자수입	6,000	0.23 %	6,000	0.09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46,208	40.12 %	1,312,780	19.07 %	△266,572	△20.31%
222 부담금	86,708	3.32 %	153,280	2.23 %	△66,572	△43.43%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650,000	24.92 %	750,000	10.90 %	△100,000	△13.33%
224 기타수입	59,500	2.28 %	59,500	0.86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250,000	9.59 %	350,000	5.08 %	△100,000	△28.57%
500 보조금	1,075,000	41.22 %	4,085,000	59.35 %	△3,010,000	△73.68%
520 시·도비보조금등	1,075,000	41.22 %	1,085,000	15.76 %	△10,000	△0.92%
521 시·도비보조금등	1,075,000	41.22 %	1,085,000	15.76 %	△10,000	△0.9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9,777	15.33 %	1,354,720	19.68 %	△954,943	△70.49%
710 보전수입등	299,777	11.49 %	354,720	5.15 %	△54,943	△15.49%
711 잉여금	299,777	11.49 %	354,720	5.15 %	△54,943	△15.49%
720 내부거래	100,000	3.83 %	1,000,000	14.53 %	△900,000	△90.00%
721 전입금	100,000	3.83 %	1,000,000	14.53 %	△900,000	△9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608,000	100.00 %	6,883,000	100.00 %	△4,275,000	△62.11 %
120 수송및교통	2,397,302	91.92 %	6,684,011	97.11 %	△4,286,709	△64.13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397,302	91.92 %	6,684,011	97.11 %	△4,286,709	△64.13 %
900 기타	210,698	8.08 %	198,989	2.89 %	11,709	5.88 %
901 기타	210,698	8.08 %	198,989	2.89 %	11,709	5.88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제4항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54번길 27 외 290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호수		
	도로명	건물번호	동	층	호
(별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에 문의 또는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227-19	동산초교로59번길 40-8	2018. 12. 21.	건물신축	동산초교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227-38	동산초교로59번길 40-4	2018. 12. 21.	건물신축	동산초교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255-16	옛신탄진로 95	2018. 12. 21.	건물신축	구신탄진으로 가는 주요도로로서 역사성 반영	
오정동 299-8	오정로 97	2018. 12. 21.	건물신축	행정구역명 (오정동)을 반영	
비래동 125-37	비래서로 35	2018. 12. 21.	건물신축	행정구역명 (비래동)을 반영	
중리동 117-11	계족로564번길 61-16	2018. 12. 21.	건물신축	계족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309-47	덕암북로 15	2018. 12. 21.	건물신축	행정구역명 (덕암동)을 반영	
상서동 290-6	벚꽃길 100	2018. 12. 21.	건물신축	벚꽃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7-37 외 2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오정동 227-37	37.93m ²	6m	18.7m	한국토지 주택공사
	오정동 227-49				
	오정동 225-22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통지서를 신탄진동 83-10번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 12. 21. ~ 2019. 1. 4.(14일간)
3. 공고장소 : 대덕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조 서

연번	토지소재		기준일	지가(원/㎡)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송달주소	
1	신탄진동	83-10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74,000 170,000 110,000 126,000	216,000 209,000 191,000 225,000	이*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	폐문부재

